

『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24명

2.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미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 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인사청문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인사청문의 절차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1조)
-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(안 제15조~제16조)
- 제척과 회피, 주의의무, 준용 등(안 제17조~제20조)

4. 검토 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지난 3월 21일,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제47조의2에 규정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. 이에 지방의회도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, 경북 영천시, 영양군, 안동시 등을 포함해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.

나. 인사청문의 대상

- 인사청문 실시의 직접적인 근거조문인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‘구미도시공사, 구미전자정보기술원,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, 구미문화재단’으로 판단됨.

다. 인사청문대상자의 서류제출

- 검증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할 서류 목록을 규정하였음. 구체적으로 ‘직업·학력·경력에 관한 사항,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,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,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’ 등의 서류이며, 직무수행계획서와 논문 및 연구실적자료를 포함하여, 인사 검증이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라. 인사청문회의 효과 및 한계

- 인사청문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첫째, 시장과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시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임. 둘째,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돼 공단, 재단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우리 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. 셋째,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,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됨. 넷째,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유도 및 알 권리 등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개정 「지방자치법」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회 결과 또한 법적 효력이 없어, 인사청문회 요청없이 임명할 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○ 타 시군 조례운영 현황

지방의회			비고
소계	광역	기초	
55개	21개	34개	※경상북도(5) (영천시, 영양군, 안동시, 김천시, 청도군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

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
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